

건설공사 뇌물수수 관련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정부는 뇌물수수를 통한 불법 수주활동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배경〉

최근 재건축 조합이나 공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공사수주나 시공상 편의를 위하여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뇌물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당사자만 형사 처벌을 받고 공사 수주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공사 수주에 따른 영업이익이 처벌에 따른 불이익보다 커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뇌물수수자).

또한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해당 건설업자).

과거 뇌물공여로 인한 부정당업체에 대하여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만을 제한했으나,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민간공사로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형법

- 금품 공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금품 취득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며, 위반 횟수와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처벌토록 한다.

※ 건설공사 수주 및 시공에 따른 뇌물수수에 관련이 있을 경우 처벌(관련법은 2005년 8월 27일 시행되었으나, 세부내용 및 예외규정은 9월 말 시행령 개정시 확정 예정임).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공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공사를 수주 받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더라도 관련 당사자만 처벌될 뿐 당해 건설업체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공여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수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하도록 하고,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38조의 2, 제83조 제12호 및 제95조의 2).

법률 제7513호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신설〉</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 2·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 11.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38조의 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제3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p> <p>제95조의 2(벌칙) 제3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